

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186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0. 10.

제안자 : 국회운영위원장

주 문

가.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, 정당법, 정치자금법 및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의·개정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내에 「정치개혁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한다.

나. 위원수는 16인으로 한다.

다.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1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.

제안이유

정당, 정치자금, 선거 및 국회제도 등의 효율적 개선을 통하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하고 국민들의 정치개혁여망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정치제도개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.